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강명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 의 자 : 강명구 · 박충권 · 송석준
김형동 · 이달희 · 고동진
박대출 · 윤한홍 · 이종배
박준태 · 성일종 · 강민국
김종양 · 박정하 · 김정재
구자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·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·군·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·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·면 지역에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·면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